

양산사송A-8BL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완화 예비자 모집

★양산시 거주자만 신청 가능(주민등록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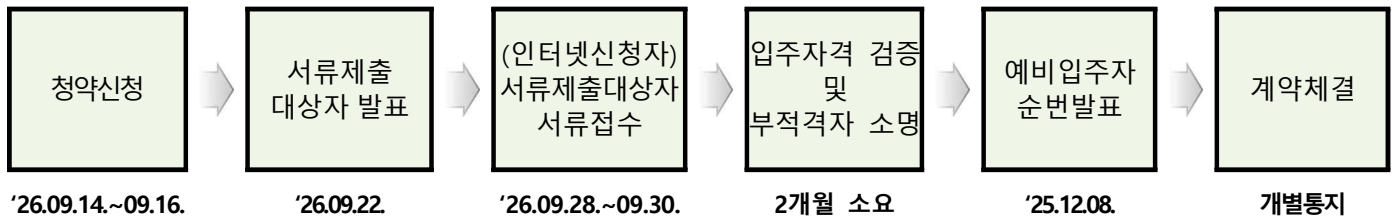
[입주자모집 공고일 : 2026.09.02.(수)]

- LH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신청 관련 사항에 대해 간혹 잘못된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신청과 관련한 상담은 주택 신청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신청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청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9.9.27.이후 입주자모집 공고 신청 시 동일유형의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통합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공고문 [5. 공급일정 및 세부절차] 및 [9. 당첨자 발표 및 계약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6.09.02.(수)**이며, 이는 입주자격(신청자격,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 소유, 자산, 소득 등)의 판단기준일이 되며,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공고문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https://apply.lh.or.kr>) 및 모바일앱 (LH청약플러스)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양산사송 A-8BL은 국민임대주택(403호), 영구임대주택(255호), 행복주택(150호) 혼합단지이며, 금회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주택은 **영구임대주택으로** 꼭 임대유형을 확인 후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 금회 공고는 최초 및 추가모집 이후 미계약되거나 퇴거한 잔여 세대에 대한 예비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하는 공고입니다.
- 금회 공고는 **소득기준을 완화(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이하)**하여 모집합니다.
- 소득 완화모집으로 입주한 경우 최초계약(2년) 이후 1회만 재계약(2년)이 가능하나, 재계약 만료 시 관련 법령에 따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예외(추가 2년 재계약)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다만, 관련 법령에 따른 유형별 재계약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갱신계약 가능합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는 경쟁 시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서류제출대상자 중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입주 자격 조사가 진행됩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 (①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중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처리됩니다.
-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합니다.
- 이 영구임대주택은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 신청서의 주소지는 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 선정절차 및 일정】



※ 공급대상별 입주자격, 신청요건 및 일정을 정확히 확인하시어 해당 일자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건설위치 :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사승로 183, 양산사승 LH8단지

2. 주택형별 공급대상 및 임대조건

■ 공급대상

공급 형별	세대수 (호)	세대별 계약면적(m ²)					모집호수 (호)	해당 동	구조 및 난방	입주 예정
		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 기타공용	주차장	합계				
26A	241	26.16	13.8091	3.3459	16.9684	60.2834	178	801	라멘구조 / 지역난방	'27.1월 (예정)
26B (주거약자용)	14	26.16	13.8091	3.3459	16.9684	60.2834	10	802		
합계							188			

- 금회 모집공고는 최초 및 추가모집 이후 미계약된 잔여세대에 대하여 예비입주자를 추가 모집하는 것으로 모집 공고일 이후 기계약세대의 계약해지, 주택보수 등으로 계약시점의 공가호수에 따라 모집호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 및 공급대상자별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26B)**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 영구임대 중 일부세대가 주거약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주거약자 전용 임대주택으로 건설되었으며, 모집정원 미달 시에도 일반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 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합니다.
- 예비입주자는 대기순번에 따라 계약체결 하며, 실입주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임대조건 ※ 신청자격 및 소득에 따라 임대조건이 적용됨

공급 형별	기본임대조건(원)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원)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원)	
	적용 구분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계	계약금(5%)	잔금(95%)				
26A/B	「가」군	2,458,000	122,000	2,336,000	48,920	(+) 3,000,000	5,458,000	33,920
						(-) 1,000,000	1,458,000	51,830
	「나」군	13,879,000	693,000	13,186,000	116,200	(+) 13,000,000	26,879,000	51,200
						(-) 10,000,000	3,879,000	145,360

- 「가」군 해당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라목에 해당하는 자

- 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목) ②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나목) ③ 위안부 피해자(다목) 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라목) ⑤ '①~④'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선정 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 자
- 「나」군 해당자 : 가군 해당자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

- 위 임대조건은 모집공고일(2026.09.02.)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계약금은 계약 시, 잔금은 입주 전 완납해야 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3.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09.02.) 현재 경상남도 양산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성년자

신청자는 「민법」상 성년자(만19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 세대주인 미성년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가 본인의 자녀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형제·자매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아래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 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	주택 또는 분양권등* 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세대구성원	■ 세대구성원의 범위 <table border="1" data-bbox="272 412 1473 936"> <thead> <tr> <th data-bbox="272 412 740 477">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th><th data-bbox="740 412 1473 477">비고</th></tr> </thead> <tbody> <tr> <td data-bbox="272 477 740 542">• 신청자</td><td data-bbox="740 477 1473 542"></td></tr> <tr> <td data-bbox="272 542 740 640">• 신청자의 배우자</td><td data-bbox="740 542 1473 640">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td></tr> <tr> <td data-bbox="272 640 740 739">•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td><td data-bbox="740 640 1473 837" rowspan="2">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td></tr> <tr> <td data-bbox="272 739 740 837">•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td></tr> <tr> <td data-bbox="272 837 740 936">•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td><td data-bbox="740 837 1473 936">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td></tr> </tbody> </table> ■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table border="1" data-bbox="272 1014 1473 1296"> <tbody> <tr> <td data-bbox="272 1014 459 1113"> 외국인 배우자 </td><td data-bbox="459 1014 1473 1113">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td></tr> <tr> <td data-bbox="272 1113 459 1252"> 외국인 직계존·비속 </td><td data-bbox="459 1113 1473 1252">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td></tr> <tr> <td data-bbox="272 1252 459 1296"> 태아 </td><td data-bbox="459 1252 1473 1296">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td></tr> </tbody> </table>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국내거소 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 단,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2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영구임대 입주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일반공급대상자도 신청가능하나, 경쟁 시 주거약자에게 최우선 공급합니다.

“주거약자” 란?

영구임대주택 일반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춘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 ①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자)
-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 ⑦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65세이상 직계존속부양자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하고, 향후 당첨 시 대표자가 계약자가 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본인과 (예비)배우자가 각각 신청 시 **중복신청**으로 **부적격 처리**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전에 혼인사실 및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계약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및 계약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 해제될 수 있으며, 공급신청 시 제출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명단과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하는 세대구성원 명단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범위는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과 동일하며, ①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②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합니다.
*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 여부는 신청 시 제출한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를 기준으로 판단
-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25조 및 1세대 1주택 신청·공급 원칙에 따라 공공임대주택(타 공사 포함)에 거주 중인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이 공급신청 후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기존 임대주택에 대한 해지 신청 및 명도 후 입주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이 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또는 입주 전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 중복입주로 보지 않아 본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 * 단,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 간주되어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득	□ 소득 기준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 이하 <월평균 소득>			
	가구원수	기본 조건		자격완화 조건
		월평균 소득 50% (1인가구 70%, 2인가구 60%)	월평균 소득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월평균 소득 150%
	1인가구	2,669,354원 이하	3,432,027원 이하	5,720,045원 이하
	2인가구	3,519,762원 이하	4,693,016원 이하	8,799,405원 이하
	3인가구	4,084,215원 이하	5,717,900원 이하	12,252,644원 이하
	4인가구	4,401,101원 이하	6,161,541원 이하	13,203,303원 이하
	5인가구	4,663,493원 이하	6,528,890원 이하	13,990,478원 이하
	6인가구	4,953,132원 이하	6,934,384원 이하	14,859,395원 이하
	7인가구	5,242,771원 이하	7,339,879원 이하	15,728,312원 이하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에 속한 자(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자산	1. 총자산 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부채반영), 일반자산) 가액 합산 기준 24,500만원 이하			
	2. 자동차 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 ※ 총자산 기준과 자동차 기준 각각 충족하여야 함			

■ 소득·자산 확인방법

- 소득·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 자료입니다.
- 소득 및 자산액은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 입주자격 검증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

※ 분양권·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12.11, 일부개정)」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 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 금융정보 조회 시 유효

* 금융정보 제공 사실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서명 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 소득·자산 산정방법(「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구분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총자산	부동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업」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산지로서 소유자와 농업확인서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 시 적용하는 자동차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금융 자산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펀드, 선물옵션 등→최종 시세가액 -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예수금: 잔액 - 연금저축: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기타 자산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준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준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 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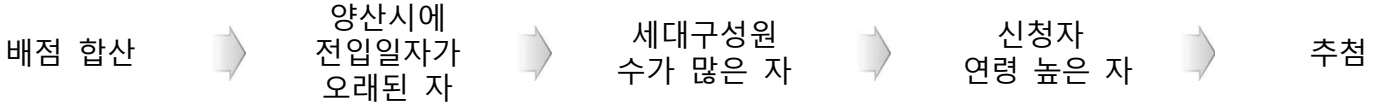
■ 불법전대자 등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4. 입주자 선정 방법 [※ 공급 자격 해당 여부, 배점적용은 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일반공급) 경쟁 시 선정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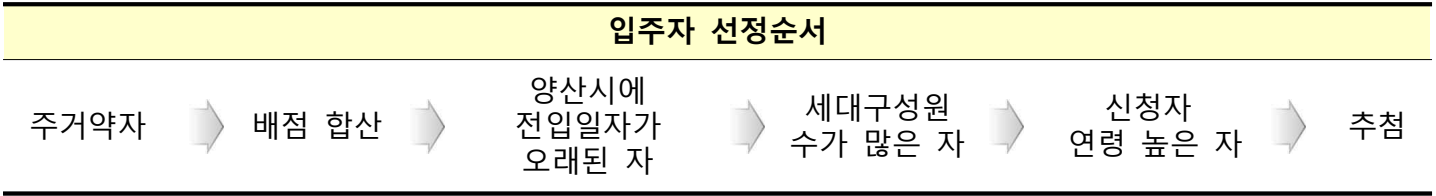
입주자 선정순서



■ (일반공급) 배점기준표

구분		배점	배점기준
1. 양산시 거주기간 (20점)	1년 미만	12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09.02.)까지 연속하여 양산시에 거주한 기간으로, 타 시·도로 전출했던 경우는 양산시에 최종 전입한 날부터 산정 (주민등록 말소의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 산정)
	1~5년 미만	14	
	5~10년 미만	16	
	10~15년 미만	18	
	15년 이상	20	
2. 공급신청자 연령 (20점)	40세 미만	14	▶ 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함
	40~50세 미만	16	
	50~60세 미만	18	
	60세 이상	20	
3. 세대구성원수 (신청자 본인 포함) (20점)	1~2인	14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와 동일
	3인	16	
	4인	18	
	5인 이상	20	
4. 소득*수준 (20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50% 이하	20	신청세대 월평균소득 기준 (50% : 1인은 70%, 2인은 60%) (70% : 1인은 90%, 2인은 80%) <소득 기준>
	70% 이하	15	
	가구원수	150%	
		70%	
		50%	
5. 가점 (10~20점) ※ 신청자 기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0 (유형 3가지 해당)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로서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수 * 국가유공자등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귀환국군포로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원 포함) * 65세 이상 직계존속(피부양자 배우자포함) 3년 이상 부양자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 소년소녀가정 * 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이주자 *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
		18 (유형 2가지 해당)	
		16 (유형 1가지 해당)	
		10	
	비수급자	10 (유형 하나 이상 해당)	▶ 비수급자 로서 * 국가유공자등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귀환국군포로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원 포함) * 65세 이상 직계존속(피부양자 배우자포함) 3년 이상 부양자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 소년소녀가정 * 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이주자 *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

■ (주거약자용 주택) 경쟁 시 선정순서



■ (주거약자용 주택) 배점기준표

구분		배점
1. 당해주택 건설지역 거주기간	10년이상	5
	5년이상~10년미만	3
	1년이상~5년미만	2
2. 공급신청자 나이	만75세이상	3
	만70세이상~만75세미만	2
	만65세이상~만70세미만	1
3. 무주택세대구성원 수 (신청자 본인 포함)	2인 이상	2
	1인	1
4. 장애정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5. 사회취약계층 해당여부 (중복 시 하나만 인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2

※ 주거약자용 임대주택과 일반 영구임대주택은 이중으로 신청이 불가하고 중복신청 시 모두 신청 취소됩니다.

5. 공급일정 및 세부절차

청약신청·접수	온라인 청약자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접수	
[온라인 접수] '26.09.14.(월) 10:00 ~ '26.09.16.(수) 17:00 ※ 24시간 가능 (단,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현장 접수] '26.09.15.(화) 13:00 ~ 16:00 * (접수장소) LH양산권 주거복지지사6층 (경남 양산시 물금읍 청운로 358)	'26.09.22.(화) 14:00 이후 (확인방법) 온라인 신청자 중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개별 확인 LH 청약플러스 (apply.lh.or.kr)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서류제출대상자조회'	[등기우편 제출] '26.09.28.(월) ~ '26.09.30.(수) ※ 일반우편, 현장제출 불가 (등기우편 발송주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15 LH경남지역본부 2층 임대공급운영팀 양산사송A-8BL 담당자 앞	'26.12.08.(화) 14:00 이후 (확인방법) * LH 청약플러스 (apply.lh.or.kr) * ARS(1661-7700) ※ 당첨자발표는 자격검증 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LH 청약 플러스 별도 게시

- 청약신청은 온라인 PC(<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 명칭 : LH 청약플러스)로 가능합니다.
- 청약신청 내용 변경(수정 또는 삭제)은 신청 당일만 가능합니다.
- **(현장접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에 한하여 아래의 장소에서 청약신청을 도와드립니다.
 - 일시 : 2026.09.15.(화) 13:00 ~ 16:00
 - 장소 : **LH양산권 주거복지지사 6층(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청운로 358, 국민연금공단 양산회관 6층)**

p.13 현장 접수 방법 참조

- 제출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방문([8. 신청서류] 참조, 서류 미지참 시 접수불가)
- 온라인(PC, 모바일) 청약신청자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2026.09.22.(화) 14:00 이후)에 서류제출대상자 선정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 서류제출대상자 확인 방법
 - PC :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서류제출대상자 명단』 클릭
 - 모바일 : “LH 청약플러스” 앱(App) →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서류제출대상자 명단』 클릭
- 서류제출대상자는 경쟁 시 전산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서류제출대상자 중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신청접수가 유효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서류제출기간에 등기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고문 [8. 신청서류]를 참고하셔서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 공급일정 변경 시 LH청약플러스 공지사항에 별도 게시합니다.

6. 신청방법

고객님의 신청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장시간 대기 및 혼잡에 따른 불편함이 있으니 가정 또는 직장에서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편리하게 신청**하여 주시고, 다만 인터넷 등 사용이 어려운 고객께서는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및 기타 배점관련 서류 등을 지참하시고 현장 방문 신청 장소로 오셔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유의사항

-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및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신청 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당부드립니다.
-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인터넷신청에 필요한 신청순위, 배점항목 등 신청자의 해당서류를 사전에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PC 또는 모바일) 청약 접수기간은 '**26.09.14.(월) 10:00 ~ '26.09.16. (수) 17:00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단, 접수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 하여야 하며, 청약 마감이 임박한 시간에는 접속자 폭주 등으로 예상치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 거주지역 배점과 관련하여 거주시작일 입력 시 공고일(2026.09.02.) 기준 양산시 거주자는 해당주택건설지역 클릭 후 주민등록표등본상 양산시에서 거주를 시작한 날짜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계속 거주기간만 인정)

■ 인터넷(PC) 청약접수 방법

■ 신청방법

인증서 준비 → LH청약플러스 접속 → 인터넷신청 → 신청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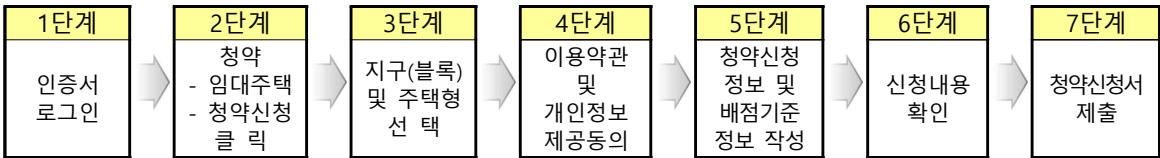
① 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 준비

- 인터넷신청을 하시는 고객께서는 반드시 전자공동인증서(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 또는 민간인증서(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② LH청약센터 접속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 인증서 로그인

③ 인터넷 신청



■ 유의사항

- 인터넷신청 1~2일 전에 신청 시 사용할 PC에서 LH 청약시스템의 「청약신청 연습하기」로 충분히 모의연습을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PC 또는 모바일) 청약 접수기간은 '26.09.14.(월) 10:00 ~ '26.09.16.(수) 17:00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 하여야 합니다.
- 청약 신청 내용 변경(수정 또는 삭제)은 청약 접수기간 동안 가능합니다.

■ 인터넷(모바일) 청약접수 방법

■ 신청방법

스마트폰에 'LH청약플러스' 앱 설치 → 스마트폰에 인증서 준비 → 모바일신청 → 신청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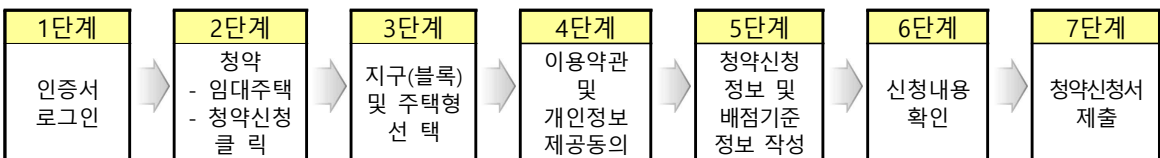
① 스마트폰에 'LH청약플러스' 앱 설치

- IOS폰 이용고객 → 앱스토어에서 앱 다운
- ANDROID폰 이용고객 → Play스토어에서 앱 다운

② 스마트폰에 인증서 준비(공동인증서 설치 또는 민간인증서 발급)

- 스마트폰에 공동인증서가 설치되어있거나 민간인증서(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공동인증서 설치 및 PC로부터 공동인증서를 복사하는 방법은 "LH청약플러스 (<https://apply.lh.or.kr>) → 고객센터 → 공동인증센터 → 공동인증서 복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③ 모바일 신청



■ 유의사항

- 모바일청약은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 LH청약플러스 앱(App)의 '인터넷청약 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PC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을 진행할 수 있으며, 모바일청약 건을 PC에서 수정·취소가 가능하며, PC에서 청약한 건을 모바일에서 수정·취소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 내용 변경(수정 또는 삭제)은 청약 접수기간 동안 가능합니다.
- 와이파이 환경이 아닌 경우 청약과정에서 데이터사용으로 인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현장 접수 방법

(인터넷 신청이 어려우신 분에 한함) [2026.09.15.(화), 13:00~16:00]

- 현장 신청자(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이 어려운 경우) : 접수장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신청접수일 등 모집일정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공급일정 및 세부절차」
- 「8. 신청서류」의 해당서류를 구비하여 현장접수장소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류를 구비하지 않고 방문한 경우 접수가 불가능하오니, 반드시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 신청자는 현장접수 시점에 모든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제출 기간에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신청장소	LH양산권주거복지지사
주소	경남 양산시 물금읍 청운로 358, 6층
지도	

7. 온라인(PC/모바일) 청약자 중 서류제출대상자 청약서류 제출방법 안내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 인터넷 신청자께서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 **2026.09.22.(화) 14:00 이후**
 - * 서류제출대상자 확인방법
 - PC : LH청약플러스 →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서류제출대상자명단』 확인
 - 모바일 : “LH청약플러스” 앱(App) → 우측상단 ≡(메뉴) 클릭 → 청약 탭 내 『청약결과 확인』 클릭 → 『서류제출대상자명단』 클릭

■ 등기우편 서류제출 방법

- 등기우편 접수 : 등기우편으로 서류제출 시, 서류제출기간 마감일(**26.09.30.(수)**)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 처리되며,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한 내 미제출 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 * 분실 등의 우려로 방문 서류제출 및 일반우편으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등기우편 발송주소 : (51430)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15, LH 경남지역본부 2층 임대공급운영팀 (양산사송 A-8BL 공급담당자 앞)

8. 신청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26.09.02**) 이후 발행분에 한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서류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 시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기관 문의 후 미리 관련 서류 발급 요망

※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예시) 123456-1234567 (O), 123456-1***** (X)

※ **서류 제출시점** : (**PC·모바일 신청자**)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제출기간에 등기우편 제출
(**현장 신청자**) 청약 신청 시 제출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자 자격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비 고	부수
필수제출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전부표기)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1통 추가 제출(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비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추가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1통

구비서류	비 고	부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작성 대상자) 세대구성원 전원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원 전원 작성 *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1통 (별지1)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작성방법) 공고 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 모집 신청·접수가 거부됨	1통 (별지5)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 (제출대상) 신청자 전체 • (동의방법) LH 홈페이지에서 확인서를 내려 받은 후,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자가 서명 또는 날인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 모집 신청·접수가 거부됨	1통 (별지2)
입주자격 완화각서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 모집 신청·접수가 거부됨	1통 (별지3)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능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당시 현거주지 임대차계약서를 의무 제출하여야 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LH공사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불필요 ※ 확정일자 대신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으로 갈음하여 제출 가능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 (주의)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1통 (별지4)
해당자만 제출		
주민등록표초본 (전부표기)	< 해당자만 제출 >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토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신청자 포함)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1통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등 사본 추가 제출 •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 등(ex 동거인) 무주택세대구성원 확인 필요한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 상 미성년 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단, 이혼·재혼의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자녀만 인정 •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외의 사람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세대원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신청자 또는 예비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만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부양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등본 상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혼인관계서류	< 신혼부부 배점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 제출 >	각 1통

구비서류	비 고	부수
	• 신혼부부인 경우 : 혼인기간 7년 이내임을 증명하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예비신혼부부인 경우 : 예비신혼부부용 신청확인서 및 세대구성확인서(별지6-1 및 6-2호), 대표신청자의 예비배우자 신분증 사본, 대표신청자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미혼 발급가능, 반드시 제출)	별지6-1 및 별지6-2
※ 신청자격 증명서	< 해당자만 제출 > • 행정기관, 시설장 등이 발행하는 증명서(아래 "■ 배점 등 관련 증명서" 참고)	1통
※ 기타서류	< 해당자만 제출 > • 제출서류로 확인할 수 없어 추가증빙이 필요한 경우 해당 추가 서류를 제출	1통

■ 배점 및 신청자격 증명서(해당자만 제출)

대상자	제출서류	발급처
생계·의료급여 등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행정복지센터
국가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특수유공자 확인원, 참전유공자 확인원	국가보훈처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시·군·구청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대상자 결정통지서 사본	여성가족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추천서,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아동복지시설 행정복지센터
소년소녀가정	소년소녀가정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귀환국군포로	귀환용사증 사본	국방부
중증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행정복지센터 장애인고용공단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혼인관계증명서	행정복지센터
생계·의료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생계·의료수급자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회보장급여결정통지서 內 소득인정액 산정 내역 (사전에 생계·의료급여 등을 신청하여 결정사항 통지서를 수령해야 함)	행정복지센터
태아를 세대구성원, 미성년자녀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자	- 직계존속(피부양자)의 주민등록초본 -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동일 주민등록등본표상 확인되지 않을 경우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행정복지센터

* 철거민(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이주자)은 기관 추천대상이므로 기관통보 명단에 따름

■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 직접 제출할 때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확인되는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가 대리 제출할 때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확인되는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기타 대리인이 대리 제출할 때	①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②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9. 당첨자 발표 및 계약안내

■ 당첨 발표 [2026.12.08.(화) 14:00 이후]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LH청약플러스\(www.apply.or.kr\)](http://www.apply.or.kr)와 ARS(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당첨명단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청약플러스 → 당첨/낙찰자명단)

■ 계약안내

-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당첨 발표 후 우리공사의 안내에 따라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주택의 동·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무작위 전산 추첨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우리 공사의 해당 주택단지 관할 사무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비입주자순위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청약플러스 → 고객센터 → 예비입주자순위조회)

10. 유의사항

구분	유의사항
임대 대상 및 조건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재계약시 소득초과 비율에 따른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될 수 있으며 자동차가액 초과자는 재계약이 불가합니다.

구분	유의사항
	• 소득 완화모집으로 입주한 경우, 1회에 한해서만 재계약을 허용하나 재계약 만료 시점에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추가로 1회에 한해 재계약이 허용됩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갱신계약 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자격상실 및 소득수준 등에 따른 관련법령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할증되며, 일정소득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퇴거될 수 있습니다. • 소득기준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에 따른 할증은 갱신계약 시 인상되는 비율(연5%이내)을 반영한 금액에서 할증됩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자격	• 이 주택의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및 계약자는 모집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 포함하여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 소득, 자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은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 소득, 총자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계약할 경우 입주 전에 신청 당시 기재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사실을 증빙하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 해제됩니다. • 태아 또는 피입양자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및 입양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입주전 파양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릅니다.
신청 서류	• 공공임대주택은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공급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다만,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이 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또는 입주 전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 중복입주로 보지 않아 본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신청은 본인, 배우자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 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 및 본인 인감도장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 신청하고,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 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범위는 신청자격상의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과 동일하며,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는 신청 시 제출한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급 신청 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구분	유의사항
입주 대상자 결정 및 계약 안내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할 때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중복 입주하고 있는 주택 중 어느 한쪽의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 입주대상자 선정 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지구 및 단지여건	[일반사항] • 신청 전 단지 및 주변 여건을 확인하셔야 하며, 인근 도로 개설 계획·일정 등에 대하여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문의·확인하셔야 합니다. • 양산사송 A-8BL과 관련된 각종 보고서(실시계획승인서 등)는 'LH 경남지역본부 양산사업단 주택건설팀'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필요 시 문의·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정일(입주자사전방문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련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자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기타 자세한 단지여건, 혐오시설의 유무 및 사업부지 개발계획 등은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주변개발, 일조권,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등으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타사 또는 당사 아파트를 비교하여 추가적인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충분히 검토 후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사용 및 운영방안은 실입주 후 입주민자치협의기구(가칭)에서 결정하여 운영되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단지여건]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됩니다. • 본 단지는 라멘구조(기동식)로서 세대 내·외부의 벽체는 경량 콘크리트패널로 설계·시공되어 세대간 방음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시설물의 '위치, 규모, 색채, 단지명칭, 동 표시 및 BI' 등은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계약자의 개별동의는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하여야 합니다.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 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시행 인가 또는 설계의 변경 등은 사업주체가 결정합니다. • 사업승인도면과 실시설계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현장여건의 반영 및 구조·성능·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구분	유의사항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팸플릿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참고자료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제작과정에서 오류·오기·오탈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803동, 804동 배면에 산이 있어 능선의 높이에 따라 일부 저층 세대의 조망권·일조권 간섭이 생길 수 있습니다. • 팸플릿 등 각종 홍보물에서 확인이 곤란한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엘리베이터 용량·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또는 변경사업계획승인도서)에 따라 시공되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적용된 내용은 향후 인허가 과정이나 관계기관의 사정, 관련 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에 조성된 도로의 레벨 및 도로와 단지사이의 녹지조성(법면발생, 식재 등), 출입구 등은 신청접수 전 반드시 현장 확인 및 인허가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전거 보관소, 재활용품보관소, 옥외쓰레기수거함 등이 세대에 근접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에 부대복리시설 등이 설치되며 내부시설(운동기구류 및 비품류 등)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단지 출입구는 2개소(801동 전면 주출입구, 804동 배면 부출입구)이며, 보행자 출입구는 차량 진·출입이 불가합니다. • 최고 층수는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지상 14~19층 규모로 건설 예정입니다. • 부대복리시설, 관리사무소(801동) 등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사생활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현장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배치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와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외 외부 도로사이의 경계담장은 행정관서의 지침에 따라 재질·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아파트 지하 PIT층은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평면, 구조형식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주현관, 어린이놀이터, 지하주차장 등에 CCTV가 설치됩니다. • 「방송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제24조의2에 의거하여 아파트 지붕층(일부)에는 이동통신사업자 등의 중계기가 추후 입주자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시기 등은 통신사업자의 여건에 의합니다. • 아파트 803동 옥탑 지붕층에는 위성안테나 2개, 공시청 안테나 1개소가 설치될 예정입니다.(인근 민간 분양 단지여건에 따라 전파 간섭 시 설치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801동, 803동, 804동 지붕층에는 태양광시설이 설치됩니다. • 태양광 발전시설을 통해 공용전기요금이 절감되거나, 절감금액 범위 내에서 일부가 유지관리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각 동 1층에 무인 택배 보관함이 설치됩니다. • 주거약자 세대에는 욕실에 비상통화장치가 1개소 설치됩니다. • 단지 내 지하에는 펌프실 및 저수조가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 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으며, 전기실 및 발전기실 인접 동의 경우 발전기의 비상가동 및 주기적 가동으로 인해 지상돌출물(D/A)을 통한 소음, 진동 및 매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옥외 쓰레기보관소가 일부 동의 전·후·측면에 인접하여 설치될 수 있어, 1층을 포함한 저층세대에는

구분	유의사항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냄새와 수거차량의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자전거보관소가 동 전·후측면에 인접하여 설치되어 설치위치에 따라 일부세대에 조망권, 소음 등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식재, 조경시설물 등의 조경계획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각 동 전면에 조경수가 식재되어 저층세대의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각종 포장부위(소방차 정차대 포함)의 재질, 색상 및 문양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운동시설, 산책로 및 주민공동시설 등의 설치로 소음발생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단지 배치 등을 필히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배치의 특성상 일부 세대의 경우, 이사 시 사다리차 등 차량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상가)의 필지는 구분되지 않으며, 아파트의 일부 부지는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 및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일부 부대시설 등에 에어컨 및 냉·난방기 설치 시 외부 또는 지붕층에 실외기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가동 시 소음·먼지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복도 및 엘리베이터 홀과 같은 공간은 공용이므로 관련법령에 의거 임의로 구조변경이 금지되며 전용 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각동 지하층의 계단실, 엘리베이터홀과 직접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이며, 각 동별 주출입구 위치가 상이하니 주차 시 해당 동에 출입가능한 지하주차장에 주차하시기 바랍니다. • 주차구획(지상 및 지하주차장) 위치 및 대수는 계획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주차구획 일부 구간은 승하차 시 지하주차장 기둥 및 옥내 소화전함에 간섭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단지배치상 동별 주차대수, 동출입구 개수, 출입동선의 길이 등이 균등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일부 세대는 주차구획이 주동 출입구에서 거리가 먼 곳에 계획되어 이동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은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배수 트렌치는 일부 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으며, 진·출입 경사로는 동절기에 차량의 미끄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해 지하주차장에 팬룸이 설치되며 팬룸 상부(옥외공간)에 환기탑이 설치되어 환기팬 가동 시 소음·먼지·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천장에는 기계설비 덕트, 배관 및 전기, 통신용 케이블 트레이 등의 각종 배선, 배관, 케이블 등이 시공됩니다. • 전기차 충전설비는 지하주차장에 급속충전기, 완속충전기 각 1개소 설치됩니다. • 세대 내 가스휴즈코크 설치의 입주자 부담사항(별도구매/설치상품)입니다. • 「방송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에 의거하여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안테나 및 중계장치) 설치위치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에 따른 당해 아파트 주차장의 유효 높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유의사항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801동 옥상, 802동 옥상, 지하주차장 헬룸 등 7개소	지하주차장 출입구높이 2.3m	지하주차장 차로높이 2.3m	지하주차장 주차면 높이 2.1m
[지구여건] • 당해지구는 양산사송 택지개발사업 진행 지구로서 주변도로 및 단지별 건축공사가 진행 중이므로, 입주 후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분진 등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양지하여 계약 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와 인접하여 경부고속도로 및 지방도1077호(노포사송로)가 위치합니다. • 양산사송 공공주택지구 경부고속도로 방음시설 설치사업 관련 「방음시설 설치 위·수탁 및 유지 관리대행 협약서」 제9조에 따라 소음 등 환경 피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아파트는 인근에 경부고속도로가 접하여 환경피해(소음 등)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이와 관련 도로관리기관에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또한, 본 아파트 인근 고속도로는 장래 확장공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확장공사 후 소음도가 입주시점의 실측소음도(도로관리기관이 측정)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음 피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음. • 양산사송 지구 내 '유1,3/초1,2/중1/초·중1/고1' 교육시설 용지가 있으며 유1,3/초1,2/중1/초·중1/고1은 개교 상태입니다. • 지구 내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지구계획의 변경, 해당 관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등에 의하여 추후에도 변경될 수 있으며, 설립계획 및 학생수용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 시기 및 학생 수 등을 감안하여 교육청(단, 고등학교 설립계획 주관은 경남도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 내 학교, 공공시설 등의 용지는 해당기관의 수요가 없을 경우 타 용도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로 추가적인 공공시설이 필요한 경우 계획 변경을 통해 지구 내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당해지구 내 일부 상업시설 및 편의시설은 용지매각 일정 및 매입자의 사업계획에 따라 주민 입주 후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사업지구 내 생활편익시설인 학교, 공공청사,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등은 사업추진 및 관계기관 여건에 따라 입주 시기까지 완공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경부고속도로를 횡단하는 외송2교 하부도로는 고속도로 횡단시설물 설치공사로 인하여 일정기간 통행이 불가하며, 지구 외 도로 및 경부고속도로 횡단 지하차도 설치의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지연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감재 및 실내환경] • 팜플릿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유사 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자재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특히 및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 있으며 또한 자재의 품질, 품귀, 제조회사 등의 부도 등 부득이한 경우 동등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고, 이로 인한 계약자의 개별동의는 별도로 받지 아니합니다. • 욕실장, 주방가구, 신발장 후면·하부 등 비노출 부위에는 별도의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현관, 발코니 등에서 바닥 단차는 시공 과정상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생활환경(관상용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				

구분	유의사항
	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 증가 시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난간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침실 내 불박이장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과대한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실외기 등)은 세대 내 설치 위치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팜플릿 등에 표현된 각 단위세대 평면의 치수는 팜플릿 제작 과정상 이해를 돕기 위하여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므로 가구 등 구입 시에는 실측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 공용부위(엘리베이터 홀, 계단실 등)는 동일 타입이라도 평면에 차이가 있습니다. • 화재 시 세대 내 별도의 대피공간이 없고 2개의 직통계단을 통하여 대피하셔야 합니다. • 각 세대 발코니에 실외기실이 별도로 계획되어 있으며 에어컨 배관구는 있으나 매립배관은 없습니다. • 각 세대 실외기실에 환기유닛(1종 기계환기)이 설치됩니다. • 설비 배관과 관련하여 PD점검구가 세대 내외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싱크대 하부는 난방설비인 온수분배기 및 주위배관, 싱크배수관 등이 설치되며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 부적합합니다. • 세대 천장에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되며 욕실은 외부창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세대의 욕실은 시스템 욕실로 시공됩니다. • 세대 내 목문틀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조명기구, 소화용기구, PVC배관 등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12조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이 사용될 예정이며 팜플릿 등에는 유사 이미지를 구현한 것으로 실제 설치 시 선정된 업체에 따라 디자인 및 색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전기, 통신단자함은 세대 내부에 설치되며, 급수 계량기함은 복도 배관함(PD함)에 설치됩니다.
기타 사항	• 신청자가 예비입주자로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 세대인 경우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주택 해약발생 시 일반세대에 우선하여 공급 안내할 예정이니, 해당세대의 경우 공급신청서 작성 시 장애인 세대 여부를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피입양자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시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됩니다. • 입주시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시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 • 입주 시 잔금의 납부, 이사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시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시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 및 65세 이상 고령자의 계약금은 주택도시보증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

구분	유의사항
	은행, 기업은행)에서 대출받으실 수 있으며,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모형,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팜플렛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및 이빌링을 원칙으로 하며, LH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자동이체 및 이빌링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차량등록 대상은 본인 또는 세대구성원 명의의 차량이어야 하며, 「공공주택 특별법」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등에 의거 차량기준가액(2026년 기준 4,542만원)을 초과하는 차량은 차량명부 등록 및 단지 내 주차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차량가액은 개별지분과는 관계없이 전체가액으로 판단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1. 무량판 관련 보강공사 현황

- 본 단지의 아파트 세대에는 **라멘구조(기동식)**를 적용하였으나, 지하주차장에는 무량판구조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무량판 구조와 관련하여 구조보강 이후 한국콘크리트학회를 통해 구조의 품질, 시공상태 적정성, 구조 보강공사 부위 적정성 검토 등 지하주차장 정밀안전점검을 **2023.10.11.~2023.12.18.** 동안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안전등급 **"A(우수)"**로 평가되었습니다.

* 시설물 안전등급 기준 : A(우수) > B(양호) > C(보통) > D(미흡) > E(불량)

12.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라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 공동주택성능등급

성능부문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소음관련 등급	1.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
	2.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
	3.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4.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5. 화장실 급배수 소음	★
구조관련 등급	1. 내구성	★
	2. 가변성	★

성능부문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3.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
	4. 수리용이성 공용부분	★
환경관련 등급	1. 기존 대진의 생태학적 가치	해당없음
	2. 과도한 지하개발지양	해당없음
	3. 토공사 절성토량 최소화	해당없음
	4.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해당없음
	5. 에너지 성능	★★★★
	6.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원 장치	해당없음
	7. 신·재생에너지 이용	★★★★
	8. 저탄소 에너지원 기술의 적용	★★★★★
	9.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사용금지	★
	10. 환경성선언 제품(EPD)의 사용	★★
	11. 저탄소 자재의 사용	★★
	12. 자원순환 자재의 사용	★★
	13. 유해물질 저감 자재의 사용	★★
	14.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	★★
	15.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 설치	★★★★★
	16. 빗물관리	해당없음
	17. 빗물 및 유출지하수 이용	해당없음
	18. 절수형 기기 사용	★★
	19. 물 사용량 모니터링	★★
	20. 연계된 녹지축 조성	해당없음
	21. 자연지반 녹지율	★★
	22. 생태면적율	★
	23. 비오톱 조성	해당없음
	24.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
	25. 자연 환기성능 확보	해당없음
	26.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	★★
	27.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수준	★★
생활환경 관련 등급	1. 단지내·외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연결	★★★★
	2. 대중교통의 근접성	해당없음
	3.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적합성	해당없음
	4.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
	5.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
	6.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매뉴얼 제공	★★★★★
	7. 사용자 매뉴얼 제공	★★★★★
	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
	9.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배려	★
	10. 공용공간의 사회적 약자배려	★
	11.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12. 세대 내 일조 확보율	★
	13. 홈네트워크 종합시스템	★
	14. 방법안전 콘텐츠	★

성능부문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화재·소방 관련 등급	1. 감지 및 경보설비	★★
	2. 제연설비	★★
	3. 내화성능	★
	4. 수평피난거리	★
	5. 복도 및 계단 유효너비	★
	6. 피난설비	★★

■ 친환경주택 성능수준

구분		적용 여부
고기밀 창호		적용
고효율기자재		적용
대기전력차단장치		적용
일괄소등스위치		적용
고효율조명기구		적용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적용
실별온도조절장치		적용
절수설비		적용
벽체 및 창호 단열성능	측벽	적용
	외벽(직접면함)	적용
	외벽(간접면함)	적용
	창호(직접면함)	해당없음(발코니 미확장)
	창호(간접면함)	적용

13.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53조)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 분양권 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주택 및 분양권 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 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 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 등의 상속·증여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⑥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이거나,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 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 단,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
-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 등을 취득한 경우
- ⑩ 보유한 분양권 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 ⑪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일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14. 편의시설 설치 안내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구 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관	마루귀틀에 경사로 설치	지체·뇌병변 장애인, 휠체어 사용자
거실	바닥면에서 1.2M 내외 높이에 비디오폰 설치	
	조명밝기 600~900룩스(lux), 세대별 시각경보기	청각 장애인
부엌	좌식 싱크대 설치	지체·뇌병변 장애인, 휠체어 사용자
	취사용 가스밸브 바닥면에서 1.2m 높이에 설치	
욕실	높낮이가 조절되는 세면기 설치	
	수건걸이 높이조정	
침실	침실조명 밝기 300~400룩스(lux)	청각 장애인
기타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음성유도 신호기 설치	시각 장애인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중복 신청 필요 없음)

* 고령자 단독 거주세대는 응급상황 대응을 위해 동체감지기가 설치되어 안전확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구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관	마루굽틀 경사로	휠체어 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현관턱에 경사로 설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뇌병변장애인, 상이 3급이상 장애인
욕실 (1개소에 한함)	단차 없애기	통행에 지장이 되는 바닥의 단차를 줄임	
	출입문 규격확대 및 방향 조정	출입구 폭 80cm이상 개폐방향 변경(안여닫이→밖여닫이)	
	좌식 샤워시설	욕조 미설치, 좌식 샤워시설 및 안전손잡이 설치 (L자형 1개, —자형 1개)	
	좌변기 안전손잡이	좌변기 벽면에 안전손잡이(L자형) 설치	
	수건걸이 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이용가능한 높이(1.0-1.2m)	
	높낮이조절 세면기	높낮이 조절 가능한 세면기 설치	
주방	좌식 싱크대	휠체어 및 의자사용이 가능한 좌식 싱크대 설치	
	가스밸브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거실	야간센서등	욕실출입구 벽체하부에 설치	
	비디오폰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시각경보기	세대내 1개소 설치	청각장애인
기타	음성유도 신호기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설치	시각장애인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 유의사항

- 신청 주택의 **단지 여건에 따라 일부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 신청 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 보훈보상 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15. 장애인의 장애 정도 구분(「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장애인의 장애 정도’)

1. 지체장애인

가.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가)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 나)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
- 다) 두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Chopart's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라)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 다)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라) 한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마)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나.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가)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다)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라)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사)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아)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가)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다)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라)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하나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사)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아)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차)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가) 두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두 손의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다)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라) 한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마) 한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바) 두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사)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기능을 잃은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가) 한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다)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라)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마)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바)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사) 한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아)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기능이 저하된 사람

라.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함)

- 1)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센티미터 이상 짧거나 건강한 다리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 2)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 3) 척추뒤굽음증(척추후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 4) 성장이 멈춘 만 18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 5) 성장이 멈춘 만 16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 6)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

2. 뇌병변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보행 또는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 2)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히 제한된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보행 시 절뚝거림을 보이거나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경미하게 제한된 사람

3. 시각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로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은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6 이하인 사람
-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3)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람
- 4)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4. 청각장애인

가. 청력을 잃은 사람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
-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나) 두 귀의 청력을 각각 6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발성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다) 한 귀의 청력을 80데시벨 이상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을 4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

나.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로 두 눈을 뜨고 직선으로 10미터 이상을 지속적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
-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평형기능의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고,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어려운 사람

5. 언어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을 잃은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음성·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하기 곤란할 정도로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지적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7. 자폐성장래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제10차 국제질병사인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않고,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정신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가.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않은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나.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礙,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에 따른 기분·의욕·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현저하지는 않으나,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다.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의욕·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라.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礙)로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9. 신장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신부전증으로 3개월 이상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10. 심장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에서 가벼운 활동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을 하면 심부전증상이나 협심증증상 등이 나타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11. 호흡기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 2)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장애로 평지에서 보행해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날숨량) 또는 폐확산능(폐로 유입된 공기가 혈액내로 녹아드는 정도)이 정상예측치의 40퍼센트 이하이거나 안정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65밀리미터수은주(mmHg) 이하인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폐를 이식받은 사람
- 2) 늑막루가 있는 사람

12. 간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C등급인 사람
- 2)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B등급이면서 난치성 복수(腹水)가 있거나 간성뇌증 등의 합병증이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간을 이식받은 사람

13. 안면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노출된 안면부의 7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 2) 노출된 안면부의 50퍼센트 이상이 변형되고 코 형태의 3분의 2 이상이 없어진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노출된 안면부의 4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 2) 코 형태의 3분의 1 이상이 없어진 사람

14. 장루·요루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 2)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 3)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
- 2) 방광루를 가진 사람

15. 뇌전증장애인

가. 성인 뇌전증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6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5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10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발작으로 인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질,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3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1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2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이에 따라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곤란한 사람

나. 소아청소년 뇌전증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16.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를 둘 이상 가진 장애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가 같은 부위에 중복된 경우

나.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중복된 경우

다. 그 밖에 중복장애로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16.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 (1)산재보험, 2)고용보험 - 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 장애인고용공단 보수월액 - 국세청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총자산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고용노동부 직접일자리사업 근로내역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 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제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지방세정 자료

기타 자산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약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금융정보 조회결과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임대보증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 직권조사 등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17.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블록	사업주체	시공업체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양산사송 A-8BL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우산업개발(주) 금명종합건설(주) 기룡전기(주) (주)민성 (주)석미 (주)동영이엔지 광운전업사 가온전설 (주)얼라이드시스템 (주)대명	-	(주)목양종합건축사사무소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주)엠디에이건축사사무소 (주)해마종합건축사사무소 (주)나로이엔씨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팀

임대문의	· 콜센터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 인터넷 - 마이홈포털 (http://www.myhome.go.kr) - LH 홈페이지 (http://www.lh.or.kr)
당첨자 ARS	1661-7700
인터넷 청약	· PC : LH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임대주택) · 모바일 : “LH 청약플러스” 앱(App) 설치 → 임대주택 → 청약신청(임대주택)

△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센터 내 「부조리 및 갑질신고」에 제보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09.02.



경남지역본부